##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318

발의연월일: 2021. 2. 25.

발 의 자: 박성중·강기윤·허은아

김영식 • 박 진 • 유경준

권영세・김 웅・태영호

이 용・최형두・권성동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납세자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 중에도 별도의 수입이 없는 고령자나 1주택에서 실거주하며 장기 보유하고 있는 은퇴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음.

현행법에는 이러한 고령자나 장기 주택보유자의 세액공제 조건을 1세대1주택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제대상자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밖에 소재하는 가격이 낮은 주택을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, 과세표준 또한 이러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올라가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.

이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밖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이하의 주택을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취득하게 된 경우 해당 주택

을 주택 수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세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8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⑧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아니한다. 이 경우 해당하는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가장 높은 1주택으로 한정한다.
- 1. 「주택법」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같은 법 제63조 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할 것
- 2.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
- 3.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취득 하게 된 주택(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 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)일 것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주택 수 계산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

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행 |     |   | 개 정 안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|---|---|
| 현<br>제9조(세율 및<br>(생 략)<br><신 설> |   | ① ~ | 7 | 재 정 안 제9조(세율 및 세액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 ⑧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 하는 주택은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해당하는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1주택으로 한정한다. 1. 「주택법」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|   |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같은  |